

[2023학년도 1학기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제출 및 논문심사 프로세스]

1. 연구계획서 제출자격 : **직전학기(2022-2)까지 자격시험(외국어, 종합시험) 합격자에 한하여 연구계획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.** (단, 2023-1학기 휴학생은 제출 불가, 휴학 중 제출한 연구계획서는 삭제됨, 복학 후 입력가능)

2.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제출 절차

- 연구계획서 입력 시 “학위논문 연구윤리 준수서약서”에 동의해야만 입력이 가능합니다.

*** 중요: 연구계획서는 반드시 학생이 학사포털에서 졸업심사 유형을 ‘학위논문’으로 지정하고, 연구계획서 내용을 입력한 후 연구계획서 제출하여 지도교수, 학과, 대학원의 승인을 받아야 완료됩니다.**



❖ 학위논문심사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이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.

- 가. 자격시험(어학시험/종합시험) 합격자(연구계획서 제출 직전 학기)
- 나. 총평량평균 : 3.0 이상
- 다. 이수학점
 - 석사/박사과정 : 30학점 이상
 - 통합과정 : 54학점 이상
 - 연구지도 등 보충 및 정강과목은 이수학점에 포함되지 않음

라. 연구계획서 제출 자격

- **상기 가) ~ 다)항 요건 충족된 자**
- 당해 학기 수강 신청학점도 학점 이수를 전제로 이수학점에 포함하여 인정 (단, 미 충족 시 졸업 불가 유의)
- 박사과정은 연구계획서 제출 학기에는 논문심사 불가 다음 학기에 논문심사 가능
- **휴학 또는 제적 학기에는 연구계획서 제출 불가(중요)**

마. 연구지도 교과목 이수

- *** 중요 : 연구계획서 승인 이후 석사 학위과정은 '연구지도 I' 1학기 이상, 박사 학위과정은 연구지도 II' 2학기 이상 이수하여야 함(미충족 시 졸업 불가)**
- 연구지도 이수 학기의 반드시 확인 필요함.(중요)

- 연구지도(I 또는 II) 수강 삭제 및 철회로 연구지도가 미충족 되지 않도록 유의 (학과의 개별 연구지도와 다름, 혼동 주의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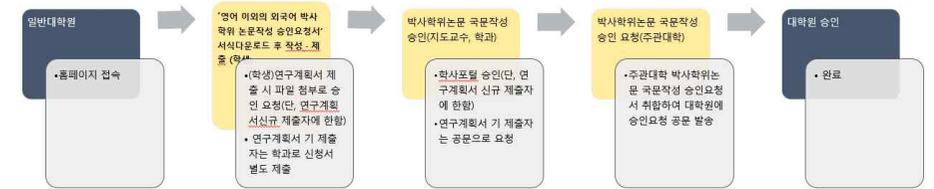
3. 연구계획서 제출 및 영문성명(여권과 동일하도록 권장) 확인 및 정정 기간

- 23. 2. 16(목) ~ 3. 16(목) 17:00까지
- 학사포털의 영문성명은 모든 증명서에 반영되는 내용이므로 확인 필수

4. 박사학위논문 영문 작성

-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 제3조(학위논문) 2항에 따라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2006년 2학기 신입생부터 논문의 영문 작성을 의무화 함.
- 단, 영문 작성이 부적합한 특정한 주제는 지도교수가 승인할 경우 국문 또는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음

*** 중요 : 박사학위논문을 국문 또는 기타의 외국어로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할 경우 23. 03. 17(금) 까지 박사논문 국문 또는 기타 외국어 작성에 대한 대학원 승인을 받아야함.**



* '영어 이외의 외국어 박사학위논문 작성승인요청서' 서식다운로드

대학원 홈페이지 → 학사안내 → 각종 양식 → 학위논문/졸업 관련 서류 양식 → '국문 또는 영어 이외의 외국어 박사학위논문 작성 승인 요청서' 다운로드

5. 논문심사위원 명부 제출 : 심사위원 명부를 학사포털에 입력 → 해당학과 심사위원 승인

(23. 03. 17(금) 17:00까지)

- 석사/박사과정 : 학위논문 심사위원 입력(심사위원장, 심사위원)
- 심사위원 본교 재직여부에 따라 교내,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분하여 입력

심사위원 구분 (재직여부에 따라 구분: 교원번호 유무)		교직원 번호	[학사포털 심사위원등록] 졸업 > 학생 > 논문심사위원등록 : 심사위원 장 및 심사위원 내부/외부 선택하여 입력
교내	본교 및 국제캠퍼스 소속으로 교직원번호가 있는 경우	0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 심사위원장 <input type="text" value="교내"/> 심사위원 <input type="text" value="교내"/> <input type="text" value="외부"/> 심사위원 <input type="text" value="교내"/> <input type="text" value="외부"/> </div>
	의료원, 미래캠퍼스 소속으로 교직원번호가 있는 경우		

외부	본교(국제캠퍼스),의료원, 미래캠퍼스 소속이 아닌 박사학위소지자	X	외부 심사위원	
----	---	---	---------	--

가. 내부 심사위원 : 전임 및 비전임 교원

- 1) 본교 소속 : 교직원(급여)번호와 심사위원번호 일치 확인 (기타 정보 입력 생략 가능)
- 2) 본교 의과대학·치과대학·간호대학 및 미래캠퍼스
 - 교직원(급여)번호와 심사위원번호 일치 확인
- 3) 주의사항: **퇴임교원은 '외부 심사위원번호'를 사용 - 교직원번호가 없는 경우**
 명예교수는 '내부 심사위원번호'를 사용 - 교직원번호가 있는 경우

나. 외부 심사위원 (석사는 1명, 박사는 2명까지 선정 가능, 외부 심사위원 인원수 준수 필)
: 본교(국제캠퍼스), 의료원, 미래캠퍼스 **소속이 아닌** 박사학위 소지자

* 학위논문제에 관한 내규 제2조에 의해 박사과정은 2학기 이상 논문지도도를 받아야 함
: 박사과정은 연구계획서를 승인받은 학기에는 심사를 받지 못하고, 그 다음 학기에 논문심사를 진행하게 됨을 각별히 유의!

대학원 학칙 제 7장 학위논문

제31조의2(교원 자녀 논문 심사위원 관리)

- ① 본교에 재직 중인 교원은 본인의 자녀가 작성한 학위논문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자 할 경우 해당 교원은 사전에 소속 주임교수 및 대학장을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6. 대학원 학위논문제에 관한 내규

제4조(논문지도교수 자격)

- ① 우리 대학교의 교수, 부교수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는 학위논문 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.
- ② 논문지도교수는 정년퇴임 시까지 석사학위과정은 4학기 이상, 박사학위과정 및 석·박사통합과정은 6학기 이상 지도할 수 있는 교수 중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7조(심사위원 선정)

- ③ 심사위원은 석사학위 논문의 경우 3인,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5인으로 하며, 석사학위 심사위원중 1인, 박사학위 심사위원 중 2인까지는 외부인사로 할 수 있다.
- ④ 심사위원 자격은 제4조에 규정한 논문지도교수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.

6. 학위논문 예비심사

- 예비심사 : **23. 03. 24(금) ~ 04. 25(화)까지**
-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접수 마감(학과) : 학과 일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(23. 04. 26(수)까지)
- 예비심사 종료 후 예심 합격자에 한해 **23. 05. 01 이후에 '학위수여 예정증명서'를 해당**

학기 졸업사정 전까지 발급 가능(23-1학기 졸업사정 이후는 졸업예정자로 대체)

7. 학위논문 본심사

- 본심사 : **23. 05. 19(금) ~ 06. 21(수) 까지**
- 본심사 결과보고서 접수 및 결과입력 마감 : 학과 일정에 따라 본심사 결과보고서 제출 **23. 06. 22(목) 까지 학사포털 결과입력 마감**

8. 학위논문 완성본 제출 (예정: 제출일은 변경될 수 있음)

- 온라인 제출 마감(예정) : **23. 06. 23(금) ~ 23. 06. 29(목)**
- 책자논문 완성본 제출 마감(예정) : **23. 06. 30(금) ~ 23. 07. 07(금)**
- 제출처 : 연세·삼성학술정보원1층 전시실
- ※ 인준서 날인(본심사 후 심사위원의 부재)이 늦어져 온라인 및 완성본 제출이 늦어질 수 있으니 학위논문 제출기한이 지나지 않도록 유의!!!

9. 학위수여 예정 증명서 발급 : 예비심사 결과입력이 완료된 후 예심합격자에 한해 **23년 5월 1일 이후부터 학위수여 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**하며, 졸업사정 이후에는 졸업자명단으로 대체됩니다.

10. 유의사항

- 효율적이고도 원활한 학사행정을 위하여 위에 명시된 기한을 엄수하여 주시고, 미 이행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특히, 본심에 합격하였을지라도 완성된 학위논문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,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다음 학기에 졸업할 수 있음을 유의바랍니다.

연 세 대 학 교 대 학 원